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19일, 김선교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1.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7.) 상정, 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8.)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
안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2. 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선교의원)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및 기업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이러한 지방세 감면 특례는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기한이 설정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및 제57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 사회적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개정안 제22조의4)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 50 경감 및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 및 개정안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대상인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받은 기업임¹⁾.

사회적기업은 2022년 4월 기준으로 3,266개임²⁾. 사회적 목적 실천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제공형 기업이 237개, 일자리제공형 기업이 2,173개, 지역사회 공헌형 기업이 264개, 기타(창의·혁신)형 기업이 328개, 혼합형이 204개임.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 기업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의 일몰을 연장함으로써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 적극적,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운영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고령자/장애인/사회적기업 > 인증사회적기업 명단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220600039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김선교의원안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6,854.0억원(연평균 2,284.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2)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개정안 제57조의2)

(가) 법인 간 합병시 취득세 감면 연장(개정안 제57조의2제1항)

개정안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1항).

기업 간의 합병은 2개 이상의 기업이 「상법」 등의 규정에 따라 안정성 확보와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해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실상 기업의 연속성이 유지되지만 취득의 요건에 해당하는 합병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임³⁾.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결합(매출액 3천억원 이상의 기업이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기업과 결합하는 경우 등)의 수를 집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동향보고」을 살펴보면, 1997년부터 2023년까지 기업결합

3) 구본풍, 현기수, 이광영,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2022년판) 776면, 삼일인포마인, 2022

심사건수는 평균 647.88건이고 이 중 2021년 기업결합 심사가 가장 많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모두 700건 이상임⁴⁾).

개정안을 통해 합병 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인수·합병 시 발생하는 세금부담의 완화로 기업간 인수·합병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1,296억원(연평균 43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나) 법인 간 합병시 취득세 감면 연장(개정안 제57조의2제3항)

개정안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물출자한 재산(제1호), 법인의 분할로 취득한 재산(제2호),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와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매출액의 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매출액의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따라 취득하는 재산(제3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른 취득재산(제5호), 공공기관의 상법상 회사로 조직변경시 취득 재산(제7호)에 대한 취득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3항).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제1호는 「국유재산법」 제60조⁵⁾에 따라 정부가 정부출자기업에 현물출자한 재산을 정부출자기업이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으로 정부출자기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함⁶⁾. 감면의 대상인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별표 1] 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32개의 기관을 규정하고 있음⁷⁾.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제2호는 법인의 인적분할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으로, 사업구조 개선을 통해 사업분야별로 전문화하여 기업의 역량을 집중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분할하는 경우에 대한 세제지원임⁸⁾.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제3호는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법인의 재산을 현물출자로 받은 피출자법인에 대한

5) 「국유재산법」 제60조(현물출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1.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2. 정부출자기업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3.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와 경영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구본풍, 현기수, 이광영,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2022년판) 794면, 삼일인포마인, 2022

7)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정부출자기업체”란 정부가 출자하였거나 출자할 기업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를 말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업체를 말한다.

8) 구본풍, 현기수, 이광영,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2022년판) 798면, 삼일인포마인, 2022

감면으로, 2014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5호에 규정되었으나 2014년 12월 31일 일몰기한이 도래했고,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규정임⁹⁾.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제5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으로, 2014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되었으나 2014년 12월 31일 일몰기한이 도래했고,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규정임¹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제7호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감면으로 취득세는 2014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3호에 규정되었으나 2015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¹¹⁾.

개정안을 통해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정부가 현물출자한 재산을 취득한 정부출자기업, 법인의 분할로 재산을 취득한 기업,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기업, 상법상 회사로 조직이 변경되면서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기업의 취득세 부담을 완화함으

9) 구본풍, 현기수, 이광영,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2022년판) 809면, 삼일인포마인, 2022

10) 구본풍, 현기수, 이광영,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2022년판) 819면, 삼일인포마인, 2022

11) 구본풍, 현기수, 이광영,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2022년판) 834면·835면, 삼일인포마인, 2022

로써 현물출자, 법인 분할, 중소기업 간 통합, 조직 변경이 원활하게 추진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 제57조의2제3항에 따라 현물출자 등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5,558억원(연평균 1,85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